

동국대학교 통학용 셔틀버스(서울캠퍼스 ↔ BMC) 운영용역

과업지시서

2024. 02.

동국대학교

버스 임차용역 특수조건

동국대학교 통학용 셔틀버스 운영용역은 이 과업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내용은 계약조건이 됩니다.

제1조(목적) 이 사업은 동국대학교(이하 “갑”이라 한다)가 학생, 구성원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차량 운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가 행하는 셔틀버스 운영용역 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 “셔틀버스 운영용역”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을 받은 자로서 “갑”이 지정하는 구간 및 일정에 의거 통학 학생과 교직원 및 “갑”의 업무로 인해 캠퍼스 간 운송이 필요한 물품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행노선 및 계약기간)

- ① 운행노선 : 『서울캠퍼스 ↔ 동국대 BMC』 주중 매일 3회 왕복
 1. 서울캠퍼스 → 동국대 BMC 구간 : 이촌역(4호선) 경유
 2. 동국대 BMC → 서울캠퍼스 구간 :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경유
- ② 계약기간 : 2024. 03. 04. ~ 2024. 12. 13.
- ③ 운행일수 : 계약기간 내 총 140일 기준
- ④ 운행구간 : 동국대 서울캠퍼스 ↔ 동국대 BMC 구간 1일 3회 왕복
(첨부된 운행 일정 참조)
- ⑤ 계약기간 중 방학기간 및 공휴일은 미 운행이며, 기타 세부사항은 “갑”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쌍방 합의 하에 조정 가능하다.

제4조(버스 운행)

- ① 차량 운행은 16인승이상의 버스로 고정 배차한다.
- ② 배정차량은 출고일 이후 5년 미만 경과된 차량으로써 냉·난방시설 완비 및 안전벨트 부착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차량 타이어 홈 깊이는 항상 1.6m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사고 혹은 각종사건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블랙박스)

스, 전방 및 후방 촬영가능, 기록영상은 10일 보존)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운행차량은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및 차량위치추적 시스템 설치하여야 한다.
- ⑤ 운행일수는 매주 월~금요일까지이며, 운행 횟수 및 시간표는 [붙임] 운행일정표를 기준으로 한다. (상세 운행시간은 “갑”의 요청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을”은 운행차량 및 운전기사를 고정 배정하여야 한다.
- ⑥ “을”은 차량고장 등 비상상황시 대체차량을 즉시 투입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 의무사항)

- ① “을”은 안전한 수송을 위하여 차량 정비를 철저히 하고, 차량 내부는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수송 책임자를 임명하여 “갑”에서 지정하는 담당자와 상시 연락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③ “갑”은 필요시 주요 정차 장소 및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차량 운전기사는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 1. 수송 책임자 통제사항 준수
 - 2. 이동경로 숙지
 - 3. 차량별 승차인원 및 학생 신분 확인
 - 4. 안전벨트 착용 안내
 - 5. 급제동 급출발 금지
 - 6. 교통신호 준수 등
 - 7. 도로 안전속도 및 일반도로 안전운행 준수
- ⑤ “을”은 운행차량에 대해 차량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행선지 표시를 반드시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표식의 상세규격 및 문구는 “갑”과 협의한다.)
- ⑥ “을”은 차량 내부에 안전벨트 착용 및 각종 교통안전 안내 표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 ⑦ “을”의 소속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 운전 중 승객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운전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 시간지연 등)를 금지하고, 2회 이상 지적 시 또는 동 사례에 대한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운전기사를 교체하여야 한다.
- ⑧ “을”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하여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날짜, 회차별 탑승인원 현황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 ①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차량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고발생시의 조치)

- ① “을”은 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상자 구호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을 “갑”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원인 및 상황
 3.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4.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5.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제8조(운전자의 의무)

- ① 차량 운행개시 20분전에 차량을 점검하여 정상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수시로 차량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 ② 운전자는 승객의 승·하차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 ③ 관계법령에서 정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④ 항상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과 이름표를 착용하고 승객에게 친절하여야 한다.
- ⑤ 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분실물에 대해서는 “갑”에게 보고 후 인계하여야 한다.
- ⑥ 운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운전 행위
 2. 난폭운전 행위
 3.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4. 휴대전화 사용 및 통화 행위
 5. 운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을 중단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7.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9. 정한 운행노선 이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정한 운행시간 이외로 운행하는 행위
11. 승객에게 통학버스 운행 명목으로 현금 및 물품을 수수하는 행위
12. 일반인을 승차시키거나 현금 및 물품을 수수하는 행위
13.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행위
14. “갑” 이 지정한 장소 이외에는 주차를 금지한다.

제9조(서류제출)

- ① “을” 은 전세버스 임차 용역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준비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시 “갑”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1부.
 3. 국세 납세증명서 1부.
 4.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5. 인감증명서 1부.
 6. 사용인감계 1부(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이 다를 경우).
 7. 인감도장(지참)
 8.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1부.
 9. 등기부등본 1부.
 10. 자동차등록증 사본 2대.
 11.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 2대.
 12. 운전자 면허증 사본 2명.
 13. 운전자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급) 2명.
 14. 운전자 범죄경력조회 회보서(경찰서 발급) 2명.
 15. 임차버스 세부견적서 1부.

제10조(제비용 부담)

- ① “을” 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 봉사료, 과태료, 범칙금

등 기타 임차버스 운행과 관련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계약금 이외의 어떠한 명목의 경비도 본교에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지체상금 등)

- ① 차량은 본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차량 운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출발 지연시간 매10분마다 계약금액의 10,000분의 5를 “갑”의 요구에 의하여 대금 지불 시에 공제한다.
- ② “을”은 임대차량의 고장 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차량을 확보하여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회차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대금 지급 시 공제 후 지급한다.
- ③ “을”은 소속 운전기사의 교체 시 본교의 승인 후 교체할 수 있으나, 계약업체 임의로 운전기사를 교체하여 친절 및 안전운행에 차질이 생긴 경우 회차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지급한다.

제12조(대가의 지급)

- ① 운행요금은 월 단위로 지급하며, 매월 운행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단, 과업지시서 제11조에 의해 지체상금 등의 사유 발생 시 공제 후 지급한다.
- ② “을”이 계약 외 운행일수를 초과하여 운행할 경우 실제초과 운행일수에 서로 협의한 별도 단가를 적용하며, 추가비용은 “갑”이 지급하도록 한다.
- ③ “갑”의 필요에 의해 운행일수 및 운행횟수가 줄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지급 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을”은 임차버스 운행 후 익월에 임차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갑”에게 청구하며, “갑”은 운행 이행 상태 등을 확인한 후 대가를 지급한다.

제13조(계약금액 조정)

- ① 버스 임차 용역계약 입찰에서 낙찰된 계약금액에 대해서 조정은 할 수 없다.
- ② 단, 최초 1학기 운행 중이라도 그 운행결과를 바탕으로 운행 관련 변경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갑”의 요청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도 가능하다.
- ③ 유류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보험 등의 가입)

- ① “을” 이 운행하는 차량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하여야 하며, “갑” 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을” 은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갑” 에게 신고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 ① “갑” 은 “을” 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② “갑” 은 제9조에 의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거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등록이 상실된 때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 ③ 이 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을” 이 관계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갑” 은 이러한 사실을 “을”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을” 은 서명 통보를 받은 후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일 이내에 “갑”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우선순위)

- ①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상의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1. 버스 임차용역 계약서
 2. 버스 임차용역 특수조건
-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갑” 의 해석에 따른다.

제17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 ① “을” 은 이 계약과 관련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 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② “을” 은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갑” 에게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동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18조(기밀누설 금지)

- ① “을” 및 “을” 의 직원은 본 계약수행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갑” 과 “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갑” 의 관할법원의 해석을 구한다.

제20조(기타) “을” 은 이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임차버스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갑” 이 지시하는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